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4403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2. 1. 14.

발의자 : 서일준 · 김승수 · 김용판

박진 · 양금희 · 윤한홍

이용 · 이주환 · 조명희

최형두 · 추경호 · 하영제

홍문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 · 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일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주체로 포함시키고, 보세창고의 설치 · 운영, 유독물 저장업, 식품 냉동 · 냉장업, 축산물 보관업 및 수산물 가공업 중 냉동 · 냉장업의 현황이 변경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9조, 제10조, 제21조의2, 제21조의9

및 제61조).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“시 · 도지사”를 “시 · 도지사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·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(이하 “대도시 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및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”으로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 · 군수 · 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9조제5항”을 “제9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항만구역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”를 “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구역에 해당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시·도지사(「항만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구역에 해당한다. 이하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21조의9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”를 “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”로”로 하며, “물류창고협회”로”를 “물류창고협회”로, “제7조제1항”은 “제21조의2제1항”으로, “제7조제3항”은 “제21조의2제2항”으로, “제7조제4항”은 “제21조의2제3항”으로”로 한다.

물류창고업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1조제2항 본문 중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”으로, “있으며 소속”을 “있으며, 소속”으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듣고,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
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
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
를 하려는 때에는 제21조제1항
및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
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
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

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여야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토지등의 수용·사용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, 재결(裁決)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시

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
또는 대도시 시장은 -----

⑥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
또는 대도시 시장은-----

제10조(토지등의 수용·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_____

----- 제9조제6항 -----
